

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(관세청 공고 제2023-79호)

『관세법』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『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』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닭으로 만든 것	삼계탕	1602.32-1010	2023.05.01. ~ 2023.11.30.
	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	1602.32-1090	
	기타	1602.32-9000	
부화용 수정란	기타(오리 부화용 수정란)	0407.19-0000	
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	대파	0703.90-2000	
냉동채소 (그 밖의 채소)	기타(대파)	0710.80-9010	
건조한 채소 (그 밖의 채소)	대파	0712.90-2030	
당근~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)	무	0706.90-1000	
감자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)	기타(감자칩 제조용)	0701.90-0000	

1.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- 할당관세

1. 수입신고지연 가산세

(1) 부과대상

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

가산세 부과대상
1. 『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』 [별표 1]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
2.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(목차 2. 할당관세품목 참고)

(2) 가산세

기준	가산세율
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~ 20일내 신고	과세가격의 0.5%
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~ 50일내 신고	과세가격의 1.0%
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~ 80일내 신고	과세가격의 1.5%
이외의 경우	과세가격의 2.0%

2. 할당관세 품목

할당관세 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(닭의 것)	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)	0207.12-0000	2023.05.01. ~ 2023.06.30.
	절단육(냉동한 것) 다리	0207.14-1010	
	절단육(냉동한 것) 가슴	0207.14-1020	
	절단육(냉동한 것) 날개	0207.14-1030	
	절단육(냉동한 것) 기타	0207.14-1090	
	설육(냉동한 것) 기타	0207.14-2090	

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(관세청공고 제2023-79호)

| Contact



유다에 관세사

T 070-4353-1588
E dyoo@esein.co.kr



성단샘 관세사

T 02-6011-3021
E dsseong@esein.co.kr